참고자료

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개선방안 등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

2026. 10. 12.

1 노인복지주택 운영에서 입소자 의견 반영 통로 마련

o **(현황) 노인복지주택은** 독립생활이 가능한 입소자가 **평생 거주하는 주택의 성격**을 띠나, **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**되어 시설 운영에 있어 **입소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적**

-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(또는 임차인대표회의)를 통해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으나, **노인복지주택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간담회를 설치·운영**하도록 규정, **시설 운영에 입소자 의견 반영에 한계**

o **(개선) 입소자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**와 **시·군·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·운영**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- 시설장이 입소자의 상황, 서비스 제공상황 등 **시설의 운영과 관리비 등의 내용을 정기적으로 입소자대표회의에 보고토록 규정**

-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**운영위원회 또는 운영간담회**와 신설될 **입소자대표회의 중 하나를 선택**하여 **운영** 가능

2 노인복지주택 설치·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명시

o **(현황)** 現 노인복지법(제33조의2)은 **노인복지주택 설치자가 시설의 전부 및 일부의 운영을 시·군·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법인·단체에 위탁이 가능**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

- **위탁된 이후에는** 서비스 未제공, 계약과 다른 서비스 제공, 관리업무 해태 등 위탁운영자가 의무를 해태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**근거 조항이 부재**해 **관리 공백 발생** 중

- 노인복지주택에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**시설폐쇄 外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입소자 권익이 위협**받는 상황

o **(개선)** 노인복지주택 **설치·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**을 **신설**하고, 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**시·군·구청장이 확인한 이후 위탁운영 관련 사항의 변경이 발생**할 경우 **재확인을 받을 의무**를 설치자에게 **부여**

▪ 설치자에게 **위탁운영자가 ①위탁운영자 요건*을 충족하지 못하거나, ②시·군·구청장 확인 당시와 현저하게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**에는 위탁운영자에게 기한을 정해 **시정을 요구**하고 이에 위탁운영자가 **불응시 위탁운영**을 **철회**할 **의무 부여**

* 노인복지주택 운영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 및 전담 조직을 갖춘 법인·단체(시행령 제20조의3)

▪ 이와 함께 입소자의 복지 수준 및 시설 운영과 직결되는 **노인복지주택의 위탁운영사 선정·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**

3 설치자 부존재시 입소자대표회의 권한 명시

o **(현황)** 현행 법령에서는 **노인복지주택 설치자가 사망, 법인해산 등으로 부존재하는 경우라도 권한을 대체할 수 없어 사각지대 발생** 중

* (00 복지주택) 설치자가 장기 수감 중으로 장기간 서비스 위탁 운영 未제공 문제로 노인복지주택 폐쇄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조치할 방법이 없는 현실 (설치자만 위탁운영사 선정가능)

▪ **분양형의 경우** 분양이 완료된 이후 **설치자가 시설 운영 등에 개입하지 않고 있어도 지속적으로 설치자로 권리 및 의무 부여**

o **(개선)** 설치자 사망·법인해산·수감 등으로 **설치자가 부존재**할 경우, 설치자가 파산·회생 연락두절·행방불명·의식불명 등으로 **설치자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·군·구청장 인정 시**에는 **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설치자의 역할*을 수행**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* 위탁운영사 선정·변경, 위탁운영 내용 변경 재확인, 위탁운영사 위탁철회 등

▪ 노인복지법에서 보장된 설치자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, (주로 분양형) **설치자 부재 등 제한된 요건에서만 허용**

4 입소 후 건강상태 변화 고려 문제(통합돌봄 관련)

o **(현황)** 현 노인복지법(제33조의2)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로 60세 이상의 노인을, 시행규칙 14조에서는 **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**를 규정

-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후 치매, 질병, 사고,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으로 **독립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는 퇴소 의무 발생, 시·군·구청장은 부적격자 발견 시 퇴소조치 등 적절한 조치 가능**

o **(개선) 노인복지주택은 사실상 주택으로 인식**되어 일단 입소한 이후에는(특히 분양형) 사망시까지 **지속적으로 거주**하려는 의지가 강함

- **본인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하고 노인복지주택으로 입소**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서 **입소한 노인복지주택에서 지속 거주(AIP)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**하는 것이 통합돌봄 취지에 부합

- **노인복지주택 입소 후 건강상태의 변화가 있더라도,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일정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**한 경우에는 **노인복지주택에 지속 거주가 가능**하도록 근거 마련

5 기타 개정사항

o **(중간집서비스)** '26.3 통합돌봄제도 도입에 맞춰 **노인 퇴원환자의 조속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**하기 위해 **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중간집 서비스가 제공**되고 있어 이에 대한 **법적근거 마련**

o **(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)** 초고령사회 **독거노인가구의 급증에 대비한 돌봄서비스 제공체계 마련** 및 기상이변에 따른 유례없는 폭염, 한파 등 **재난상황에 적시에 대응**할 수 있도록 **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전달체계**(지역센터 운영) **재정비**